

## '23~'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, 시·도 담당자 회의 개최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10월 27일(금) 오후 2시 동절기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'2023~2024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'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영상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3.11.1.(수)부터 2024.3.31(일)까지이며,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3.12.1(금)부터 2024.2.29(목)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.

'2023~2024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'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첫째, 소방, 경찰,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위기노숙인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한다.

이를 위하여 거리 순찰·상담반 및 공동대응반을 구성·운영하여 거리 순찰과 상담을 실시하고,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주기적인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.

둘째, 각종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,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자를 발굴하여 방문 상담 및 식사 배달 등 지원한다.

셋째,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\*를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\*\*한다.

\* (응급잠자리)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, 노숙인 밀집 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, 또는

쪽방·여인숙·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노숙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잠자리  
 \*\* (노숙인일시보호시설) 시설당 연속으로 최대 50일(+10일) 내에서 이용하는  
 것이 원칙이나, 동절 기간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기간 제한 없이 이용

또한, 지방자치단체는 침낭, 매트, 목도리, 손난로 등 겨울철 응급구호  
 물품을 배포하고, 관내 무료급식소를 운영 점검 등 긴급 식량 지원 대책을  
 마련한다.

넷째,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동파 또는 화재사고 예방을  
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보일러, 배관, 난방기구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  
 을 실시하고, 긴급 개·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다섯째,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잠자리, 무료급식 등 이용 방법에 대해 홍  
 보하고, 건강 이상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번호와 담당자를  
 쪽방주민에게 사전 안내한다.

여섯째, 노숙인시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를 위한 임시 격리공간  
 을 확보하고, 노숙인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에도 대비할  
 계획이다.

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“겨울철 한파 기간에 노숙인, 쪽방주  
 민 등 주거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  
 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'23년~'24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 
 2. 시도 동절기 대책 담당자 간담회 개최(안)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복지정책관<br>자립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영아 (044-202-307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정재은 (044-202-3074) |



**I. 추진배경 및 추진개요**

**① 추진배경**

- 2023~2024년 겨울철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설·한파 등이 예상되므로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보호 강화 필요

**② 추진개요**

- 추진 기간 : '23.11.1~'24.3.31 중 중점 추진기간은 '23.12~'24.2월 3개월 간
- 추진 방향
  - ①지자체의 선제적 위기대응능력 강화, ②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복지자원 사전확보, ③감염병 대응 철저 등을 집중 추진

**II. 노숙인 등의 현황**

- '22년말 총 1.3만 명(거리노숙인 1,594명 시설노숙인 6,875명 쪽방주민 4,775명)
  - ※ 노숙인 등 규모(쪽방주민 포함) : ('17년) 1만 6,506명 → ('22년) 1만 3,244명, △3,262명(△19.8%)
- 유형별 특성
  - (거리노숙인) 서울, 경기 등 대도시에서 주로 밀집, 정신질환, 알코올 등 시설입소 거부 경향 및 강제입소가 어려워 기온 급강하 등 환경에 취약
  - (시설노숙인) 보일러·수도 동파 및 화재 등 시설 안전사고 위험
  - (쪽방주민) 생계유지 및 건강관리 어려움, 안전사고에 취약

**III. 주요 보호 대책(안)**

**① 시·도 및 시·군·구 위기 대응능력 강화**

- 신속한 발견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의 적기 지원을 위하여 각 지자체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중점 점검 항목\* 지정
  - \* 8개 과제, 38개 점검 항목
- 거리순찰·상담반 운영, 간호사 등 쪽방촌 건강관리 전문인력 확보, 소방·경찰·의료기관 등과 공동대응반 운영

## ② 위기 노숙인 조기발견 및 집중 보호 대상 노숙인 등 발굴

- (거리노숙인) 주·야간 순찰을 확대하고, 기동력 확보를 위한 전용 차량 지원
- (쪽방촌)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, 장애인, 기저질환 보유자 등 지자체 상황별 집중 보호 대상 쪽방주민 발굴

## ③ 동절기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자원 확보

- 지자체별 수요 고려 응급잠자리, 생필품 등 사전확보 및 지원
- 무료급식소 운영 점검 등 긴급 식량 지원대책 마련
- 동절기 보호 대책 추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

## ④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지원

- (노숙인시설) 민관합동 점검, 시설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즉시 개·보수 지원
  - \* '24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예산 3,822백만원
- (쪽방촌) 화재·동파 사고 등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, 긴급 보수 및 대피 지원

## ⑤ 긴급 신고 및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

- (거리노숙인) 응급잠자리, 무료급식 등 위기 지원 서비스 및 응급 신고번호 안내
- (쪽방주민) 쪽방상담소 중심 동절기 주민 지원 서비스 집중 안내

## ⑥ 감염병 대응 철저 및 독감 예방접종

- (노숙인시설) 시설 내 격리공간 또는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울 경우 외부시설을 활용한 임시 격리시설 운영 등
- (노숙인) 노숙인 대상 독감 예방접종 독려,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의료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및 개인 방역물품 지원

**□ 추진 배경**

- '23-'24년 겨울철 폭설·한파 등이 예상되므로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필요

**□ 일시 및 방식**

- '23.10.27(금) 14:00~15:00, 영상회의

**□ 참석 대상**

- (복지부) 복지정책관, 자립지원과장 등
- (지자체) 17개 시·도 동절기 보호대책 담당 팀장 등

**□ 회의 안건**

- '23~'24년 동절기 노숙인·쪽방주민 보호대책 주요 내용
- 폭설·한파 등 대비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보호 강화

**□ 회의 진행순서**

| 시 간         |     | 내 용       | 비 고   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14:00~14:05 | 5'  | 개회 및 안내   | 자립지원과장 |
| 14:05~14:25 | 20' | 보호대책 논의   | 복지정책관  |
| 14:25~14:50 | 25' | 질의응답 및 건의 | 참석자 전원 |
| 14:50~15:00 | 10' | 마무리 말씀    | 복지정책관  |